

3.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中改正令 施行에 따른 留意事項

建設部 第58501-261號 1993. 2. 26

(단위 : 세대)

관계 규정	규 정 내 용	시 행 지 칩
제4조의2(노후, 불량주택의 범위)	○ 재건축조합주택 대상 노후, 불량주택 - 재건축조합주택 건설은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연립주택만 허용 ※ 다세대, 단독주택은 제외	○ '93.3.1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
제9조의2(주택 건설사업자등의 등록) 제4항	○ 등록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	○ '93.2.17이후 발생한 변경분부터 적용 ※ '93.3.1부터 9일전 이후
제10조의2(건설업법 적용배제 기준)	○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의 기술능력, 주택 건설실적의 상향 조정	○ '93.3.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
제32조(사업계획 승인대상등) 제2항제8호	○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서류 - 재건축조합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확인서	○ '93.3.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
제34조의3(공동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)	○ 토지소유자,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구비해야 할 요건	○ '93.3.1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, "제3호" 규정의 "공제조합"의 보증은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보완 가능
제42조(주택조합의 설립등) 제1항	○ 주택조합설립인가, 변경인가 신청서류	○ '93.3.1이후 인가신청분부터 적용
제10항	○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사업계획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가 취소	○ '93.3.1이후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의 기산일을 '93.3.1부터 산정